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6일, 서천호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천호 의원)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44개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식품의 제조·가공·조리·포장 등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정보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전무하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도 10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제8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

###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1) 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br>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br><br>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br>2.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br><br><u>&lt;신설&gt;</u><br><br>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br>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개발<br>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br>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br>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br>-----<br>-----<br>-----<br>-----.<br><br>1.·2. (현행과 같음)<br><br><u>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u><br><br>3.~6.. (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
| 필요한 사항 | 부칙<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관계기관 의견

### 1)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연구·개발·보급 근거 마련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2) 식품산업협회<sup>1)</sup>

- ☐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식품산업 인력난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개정안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3) 한국푸드테크협의회<sup>2)</sup>

- ☐ 푸드테크협의회는 최근의 인력부족 문제 및 고용인력 노령화에 대응하여 식품산업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 관련 정책 지원, 업계의 이익 보호, 품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1999년 창립)  
대형 식품 제조사,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기업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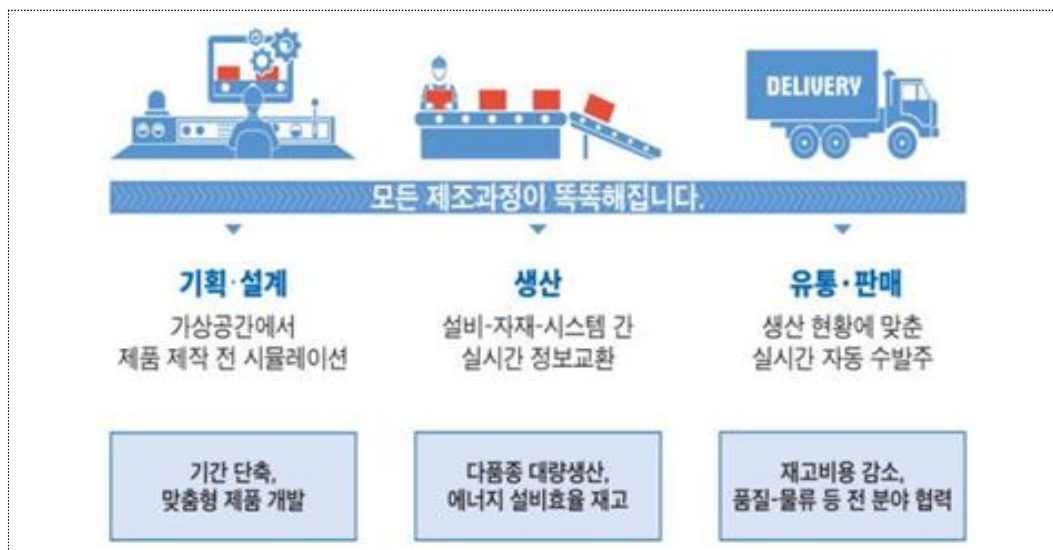
2)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기업과 학계, 정부간 협의체(2023년 설립)

## 다. 검토의견

### 1) 개정필요성

최근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인력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ICT기술 기반의 생산·제조 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추진하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있음.

#### 【스마트공장 개념】



※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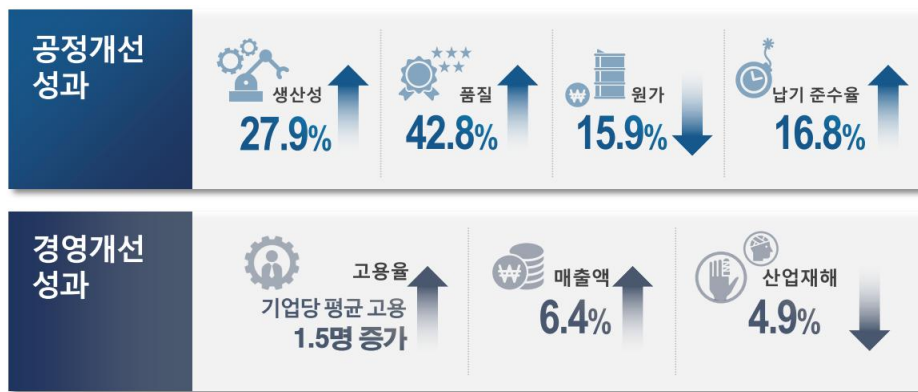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 추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3. 1. 3. 제정되어 같은 해 7. 4.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sup>3)</sup>,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sup>4)</sup> 등 다양한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3)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한국통계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분석」(2022. 4.)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의 보급으로 생산성과 품질은 각각 27.9%와 42.8% 향상되고, 납기준수율과 매출액은 각각 16.8%와 6.4% 상승하였음.

또한 평균 고용인원은 기업당 1.5명이 증가하고, 산업재해율은 4.9%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스마트 공장의 도입은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자료: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분석, 한국통계진흥원(2022.4.)

한편,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에 대한 업종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성증가, 품질향상, 원가감소 및 납기준수 등 주요부분에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이 상위에 위치한 바, 식품기업의 경우 스마트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타 업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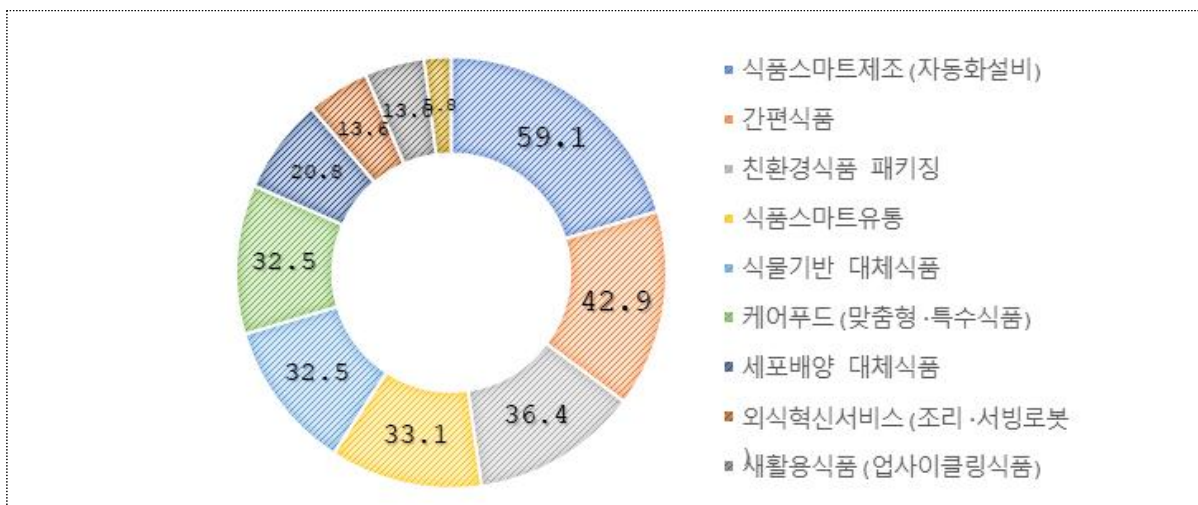
### 【스마트공장 보급 업종별 성과】

| 순위 | 생산성(P)<br>증가(%)                     | 품질(Q)<br>향상(%)                           | 원가(C)<br>감소(%)                      | 납기(D)<br>준수(%)                           |
|----|-------------------------------------|------------------------------------------|-------------------------------------|------------------------------------------|
| 1  | <b>식품제조업</b><br>75.1                | <b>음료 제조업</b><br>60.6                    | 목재 및 나무<br>제품 제조업;<br>가구 제외<br>43.4 | 의료용 물질<br>및 의약품<br>제조업<br>36.5           |
| 2  | 목재 및 나무<br>제품 제조업;<br>가구 제외<br>61.1 | 코크스, 연탄,<br>석유정제<br>60.0                 | <b>식품제조업</b><br>32.4                | 의복, 의복<br>액세서리 및<br>모피 제품<br>제조업<br>28.3 |
| 3  | <b>음료 제조업</b><br>45.4               | 기타 제품<br>제조업<br>55.0                     | 인쇄 및 기록<br>매체 복제업<br>26.9           | <b>식품제조업</b><br>27.8                     |
| 4  | 비금속 광물<br>제품 제조업<br>36.8            | <b>식품제조업</b><br>54.6                     | 고무 및<br>플라스틱<br>제품 제조업<br>17.3      | 기타 제품<br>제조업<br>20.9                     |
| 5  | 기타 제품<br>제조업<br>35.0                | 의복, 의복<br>액세서리 및<br>모피 제품<br>제조업<br>51.1 | 자동차 및<br>트레일러<br>제조업<br>17.3        | 섬유제품<br>제조업; 의복<br>제외<br>20.5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9. 5. 24)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식품업체 관리자급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기업은 스마트공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식품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로 스마트공장 분야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선 개발이 필요한 식품관련 기술개발 분야】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업체 관리자급 대상조사(2024년 하반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예산 현황(2020년~2024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사업 내용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고부가가치<br>식품<br>기술개발<br>(R&D)<br>(2810<br>-420) | 미래<br>대응식품                 | 미래 식품 시장 선점을 위해 질환 관리식, 특수·대체식품 등 융·복합 식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                           | 2,146 | 10,847 | 15,804 | 17,467 | 14,440 |
|                                                | 식품<br>품질안전                 | 식품 품질·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가공·관리기술, 친환경·기능성 식품 포장 기술 개발 등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추진    | 1,179 | 2,530  | 5,778  | 7,014  | 3,952  |
|                                                | 식품<br>핵심소재                 | 식품 신소재 및 대체소재 개발 기술 확보로 국내 농산물 및 천연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산업적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지원 | 1,790 | -      | -      | -      | -      |
|                                                | 차세대<br>식품가공                | 식품산업 가치사슬 내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주요 소재 개발, 식품 생산 관련 부품, 설비 국산화 등 차세대 식품 제조 기술개발 지원     | 1,442 | 2,045  | 5,967  | 7,287  | 5,692  |
|                                                | 5G기반<br>식품안전<br>생산기술<br>개발 | 중소 식품업 현안 해결을 위해 5G 기반의 고효율·저비용 식품 생산·제조 등 스마트 식품 공장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              | -     | 4,700  | 6,267  | 6,267  | 4,904  |
|                                                | 글로벌<br>푸드테크<br>공동연구        | 푸드테크 분야 중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 -     | -      | -      | -      | 1,700  |
|                                                | 스마트<br>유통관리                | 농식품 지능형 저장·수급, 품질관리 기술개발 및 유통·소비 전주기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연계 체계 구축                    | -     | -      | -      | -      | 2,804  |
|                                                | 물류유통<br>자동화                | 신선 농산물 물류·유통 분야에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산지유통센터(APC) 및 물류센터 자동화·스마트화            | -     | -      | -      | -      | 4,119  |
|                                                | 기획평가<br>관리비                | 기획비·평가비·관리비 등 지원                                                               | 151   | 704    | -      | -      | -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사업 내용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합계   |      |       | 6,708 | 20,826 | 33,816 | 38,035 | 37,61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2024.11.28.)

## 2) 조문 검토 사항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sup>5)</sup>.

| 구 분  | 기계화                                   | 자동화                                                | 지능화                                       |
|------|---------------------------------------|----------------------------------------------------|-------------------------------------------|
| 개념   | · 인간이나 동물이 하는 노동을 기계가 대신함. 또는 그렇게 함.  | · 다른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움직이거나 작용되게 함                  | · 기계 따위에 감각 기능과 인식 기능을 가지도록 함.            |
|      | · 인간이나 동물이 수행하던 작업을 기계가 대신 수행하도록 만든 것 | · 작업이나 공정을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 · 시스템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 |
| 인간개입 | 높음                                    | 중간                                                 | 낮음                                        |
| 기술수준 | 낮음                                    | 중간                                                 | 높음                                        |
| 예시   | 트랙터, 크레인                              | 조립로봇, 자동화생산라인                                      | 자율주행, AI기반로봇                              |

개정안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라는 표현은 2020. 8. 28. 제정된 「양식산업 발전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지원)의 문구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5) 표준국어대사전 등

### 「양식산업 발전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사·연구 사업
2. 양식산업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4. 양식시설 개선·보완 사업
5. 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6. 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보급 사업
7. 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
8.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편, 2024년 11월 28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푸드테크 연구개발’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에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조문】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 푸드테크 연구개발
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 (2) 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시책 수립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책에 따라 현대화를 추진하는 식품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의 현대화(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을 현대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 나.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련된 시책마련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스마트공장화 및

이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지원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부령으로 정하기보다,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 식품산업협회

식품기업의 스마트공장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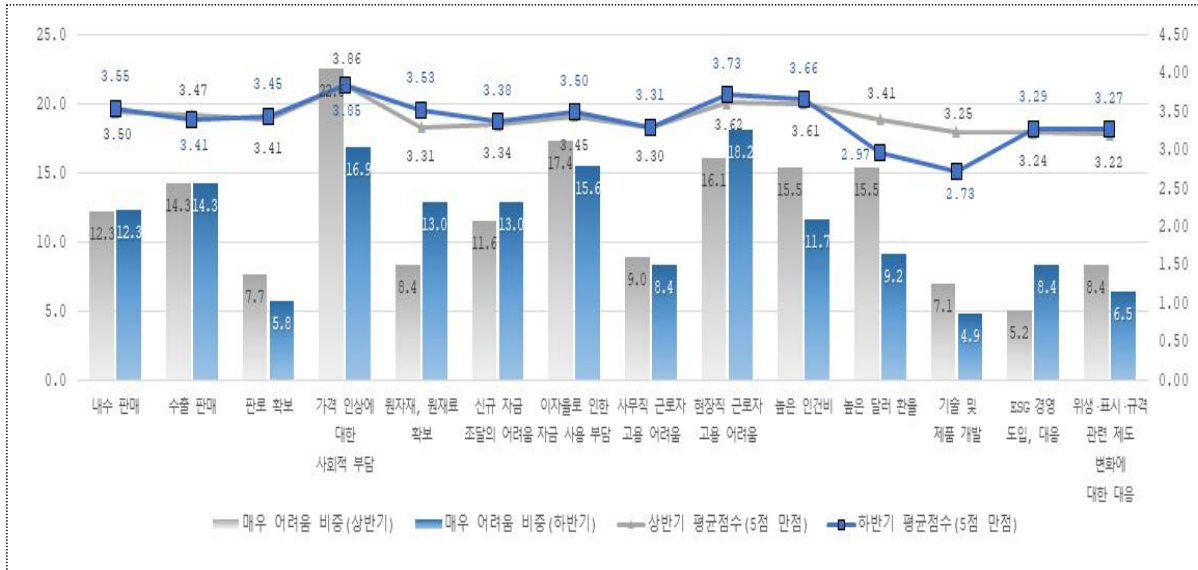
## 3) 푸드테크협의회

푸드테크협의회는 최근의 인력부족 문제 및 고용인력 노령화에 대응하여 식품산업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 검토의견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시행한 식품업체 관리자급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기업은 ‘가격인상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함께 ‘현장직 근로자 고용’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식품기업 애로사항 조사결과】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업체 관리자급 대상조사(2024년 하반기)

이러한 인력난 속에서 특히 고용인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식품기업의 경우 특히 식품스마트제조(자동화설비 도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식품업계 기업규모별 관심 분야】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업체 관리자급 대상조사(2024년 하반기)

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 7만 4,50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400개로 3.22%에 불과하여, 여전히 전체 제조업 (5.52%)<sup>6)</sup> 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1.17%, 10인 이상 49명 이하인 식품제조기업은 18.54%에 그치고 있음.

[식품 제조기업(제조업종코드 C10식품제조, C11음료제조)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

| 사업체 구분 |          |      | ‘15~<br>‘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합계     |
|--------|----------|------|--------------|--------|--------|--------|--------|------|--------|
| 10인 미만 | 스마트공장    | 도입수  | 75           | 73     | 227    | 175    | 175    | 65   | 790    |
|        |          | 도입율* | -            | -      | -      | -      | -      | -    | 1.17   |
|        | 식품제조기업 수 |      | -            | 56,468 | 65,893 | 67,349 | 67,453 | -    | 67,453 |
| 10~49인 | 스마트공장    | 도입수  | 125          | 139    | 307    | 214    | 223    | 103  | 1,111  |
|        |          | 도입율* | -            | -      | -      | -      | -      | -    | 18.54  |
|        | 식품제조기업 수 |      | -            | 4,826  | 5,012  | 5,494  | 5,991  | -    | 5,991  |
| 50인 이상 | 스마트공장    | 도입수  | 80           | 69     | 106    | 105    | 101    | 38   | 499    |
|        |          | 도입율* | -            | -      | -      | -      | -      | -    | 47.03  |
|        | 식품제조기업 수 |      | -            | 1,035  | 1,060  | 1,072  | 1,061  | -    | 1,061  |
| 합계     | 스마트공장    | 도입수  | 280          | 281    | 640    | 494    | 499    | 206  | 2,400  |
|        |          | 도입율* | -            | -      | -      | -      | -      | -    | 3.22   |
|        | 식품제조기업 수 |      | -            | 62,329 | 71,965 | 73,915 | 74,505 | -    | 74,50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2024.12.6.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

6)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 5억원 이상 매출 업체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2024.12.6. 제출)

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동 사업으로 편성된 전체 예산의 집행률이 51.8%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도 사업 포기 등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12 | 계      |
|------------------|-----|--------|--------|--------|-------|-------|--------|-------|--------|-------|-------|--------|
| 농식품<br>시설<br>현대화 | 예산액 | 10,300 | 10,300 | 10,000 | 8,348 | 9,109 | 10,000 | 4,108 | 10,000 | 9,000 | 9,000 | 90,165 |
|                  | 집행액 | -      | 6,232  | 3,247  | 5,716 | 3,115 | 9,032  | 2,748 | 9,459  | 5,188 | 1,964 | 46,701 |
|                  | 집행률 | 0.0%   | 60.5%  | 32.5%  | 68.5% | 34.2% | 90.3%  | 66.9% | 94.6%  | 57.6% | 21.8% | 51.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2024.12.6.제출)

또한,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52개 기업 가운데 18개 기업만이 자동화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에 미치는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업 설비자동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계  |
|----------|---------|-----|-----|-----|-----|-----|-----|-----|-----|-----|-----|----|
| 지원<br>건수 | 자동화 도입  | 0   | 3   | 1   | 2   | 1   | 1   | 2   | 0   | 5   | 3   | 18 |
|          | 자동화 미도입 | 1   | 3   | 3   | 6   | 6   | 6   | 3   | 5   | 0   | 1   | 34 |
|          | 계       | 1   | 6   | 4   | 8   | 7   | 7   | 5   | 5   | 5   | 4   | 5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2024.12.6.제출)

이에 개정안은 식품기업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설을 자동화·기계화·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 따른 ‘식품산업’에는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 포함되므로 이를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관련조문】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한편, 개정안은 제8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관련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는 관련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식품산업 시설의 현대화(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 포함)에 필요한 시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수립·시행 가능하므로 제1항의 주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1항과 제2항의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여러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을 위임하게 되므로 제3항에 따른 위임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특히 고용인원 50인 미만의 식품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화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10인~49인 규모 식품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화 비율이 18.54%, 10인 미만 규모 식품기업의 경우는 1.1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시제품(試製品)의 개발·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허락 또는 그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등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5조제1항)

####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식품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 ‘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br>-----<br>----- <u>및 시설 현대화</u><br><u>(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포함한다)</u><br>등 ----- |

## 나. 관계기관 의견

###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2) 식품산업협회 및 푸드테크협의회

식품기업 스마트공장화를 위해서는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효율적 도입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특히 소규모업체의 경우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다.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식품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중에 있음.

【식품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관련 예산 현황: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사업 내용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식품산업<br>인프라<br>강화 | 식품품질<br>위생역량<br>제고 | HACCP,<br>식품안전시스템 구축,<br>상품품질개선, 품질인증<br>등 컨설팅 지원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합계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2024.12.6. 제출)

그런데 식품 제조기업 등 식품사업자가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추진할 때, 투자 대비 효과를 예측하고, 필요예산을 산출하며, 자금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컨설팅 지원의 대상에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추진하려는 식품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특히 소규모 제조기업 등은 이러한 선행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중소기업<sup>7)</sup>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수정가결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부대의견

---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자산총액(5천억 미만), 평균매출액(업종별로 400억원이하~1,500억원이하/식품제조업은 1,000억원 이하, 음료제조업은 800억원 이하)

소기업: 평균매출액(업종별로 10억원이하~120억원이하/식품제조업·음료제조업은 120억원이하)

중기업: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없음

##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의무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법 체계를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8조의2 및 제15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현대화(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대화”를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대화(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포함한다)”를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u>&lt;신 설&gt;</u> |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u>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의 <u>현대화(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u>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u> -----<br>-----<br>-----<br>----- <u>자</u><br><u>동화·기계화 및 지능화</u> -----<br>-----<br>-----. |
|                    |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u>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을 <u>현대화</u> 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br>-----<br>-----<br>-----<br>----- <u>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u> -----<br>-----<br>-----                                                 |

|                                                                                           |                                                                                                                               |                                                                                                            |
|-------------------------------------------------------------------------------------------|-------------------------------------------------------------------------------------------------------------------------------|------------------------------------------------------------------------------------------------------------|
|                                                                                           | ③ 제2항에 따른<br>지원 대상·기준·<br>절차 및 방법 등에<br>필요한 사항은 농<br>림축산식품부령으<br>로 정한다.                                                       | ③ -----<br>-----<br>-----<br>-----대통령령-----                                                                |
|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br>-----<br>-----<br>-----및<br><u>시설 현대화(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포함한다)</u> 등-----<br>-----<br>-----<br>----- |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br>-----<br>-----<br>----- <u>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u> -----<br>-----<br>-----<br>----- |
| 1. ~ 4. (생략)<br>②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1. ~ 4. (개정안과 같음)<br>② (개정안과 같음)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  
의 연구·개발·보급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  
조 시설 등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  
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 “및 시설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 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br>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br>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br>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br>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br>한다. |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br>촉진) ① -----<br>-----<br>-----<br>-----<br>-----.                                                                                                                                                                                                                   |
| 1. · 2. (생    략)<br><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br>2의2. <u>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br/>  동화 · 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br/>  한 기술의 연구 · 개발 · 보급</u>                                                                                                                                                                                          |
| 3. ~ 6. (생    략)<br>② (생    략)<br><신    설>                                                              | 3. ~ 6.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br>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br>현대화 등) ① <u>국가 및 지방자<br/>  치단체는 식품산업의 경쟁력<br/>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br/>  요한 생산 · 제조 시설 등의 자<br/>  동화 · 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br/>  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br/>  한다.</u><br>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br/>  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br/>  산업에 필요한 생산 · 제조 시</u> |

|                                                                                                                                                         |                                                                                                                                                                                                                                                                                                                               |
|---------------------------------------------------------------------------------------------------------------------------------------------------------|-------------------------------------------------------------------------------------------------------------------------------------------------------------------------------------------------------------------------------------------------------------------------------------------------------------------------------|
| <p>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br/>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br/>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br/>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br/>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br/>시할 수 있다.</p> <p>1. ~ 4. (생략)<br/>② (생략)</p> | <p><u>설 등을 자동화·기계화 및 지<br/>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br/>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br/>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br/>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br/>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br/>다.</u></p> <p>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br/>-----<br/>-----<br/>-----<u>및 시설 자동화·기계화</u><br/><u>및 지능화 등</u>-----<br/>-----<br/>-----.</p> <p>1. ~ 4.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p> |
|---------------------------------------------------------------------------------------------------------------------------------------------------------|-------------------------------------------------------------------------------------------------------------------------------------------------------------------------------------------------------------------------------------------------------------------------------------------------------------------------------|